

회사에서 ‘발살바 효과’로 급사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

2004구합26994

[주 문]

1. 피고가 200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요지]

망인은 심장 관상동맥의 심한 죽상동맥경화상태에서 배변 중 ‘발살바 효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배변 장소가 현장사무실에 마련된 곳으로서 업무수행 중에 그 장소를 이용한 점, 사망 직전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1. 사실 인정

(1)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 등에 관하여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2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토건의 공사과장으로서 망인의 부하직원인 ○○○으로부터 당일 작업내역과 다음날 작업계획을 보고받고 작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소장실로 들어갔다.

(나) 소장실 바닥은 실내 장판이 깔려 있어 평소 맨발로 다니던 곳이다. 망인은 그곳 바닥에 옷을 벗어 놓고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있다가 밖에서 업무를 보던 ○○○를 불러 배개를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은 망인의 옷차림을 보고 더워서 그런 것이란 인상을 받았고 망인에게 배개와 매트리스를 갖다 주었는데, 망인은 매트리스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였다. 망인은 잠시 후 ○○○를 다시 불러 “가슴이 따끔거린다. □□□ 총무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 마련된 화장실 좌변기에서 대변을 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다) □□토건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숙소를 제공하였는데, 망인, ○○○, □□□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차로 약 2~3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일반직원 4명과 직영 근로자 10여 명은 현장 사무실에 붙어 있는 숙소에서 각각 기거하였다. 망인은 주로 위 여관에서 잠을 자지만 간혹 사무실에 붙어 있는 숙소에서 자기도 하였고, 소장실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밤에 잠을 자는 경우는 없었다.

(2) 망인의 업무 등에 관하여

(가) 망인은 1997. 3. 12. □□토건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줄곧 사망 때까지 약 5년 3개월 남짓 동안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공사현장이 망인의 주거지(이 사건 재해 당시는 안양시에 있었다)로부터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있을 경우 공사현장 주변에 마련된 숙소에서 기거하고, 2주에 한번씩 휴무하는 주말에야 주거지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망인은 2003. 3. 1. 전주실내수영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때로부터 사망 때

까지 4개월 이상 위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였다.

(다) 공사현장 소장은 공무담당(현장사업계획서, 설계변경, 매출 및 손익분석 등에 관한 서류 작성), 관리담당(현금, 회계, 노무관리 등), 공사담당(현장 공사) 등 부문별 중간관리자의 보조를 받아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주된 업무내용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숙지, 실행예산의 편성 및 관리, 일용직 인원의 수급 및 작업지시, 기계·장비 수급 및 사용계획수립,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내역 작성, 현장자재 수급 및 관리, 원청업체에 공사진행 보고, 공사기성고 신청 및 운영자금 관리, 현장 안전 및 보건, 거래처 또는 원청업체 관계자와 원만한 관계유지 등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에 부임한 후 통상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는데, 주로 공사현장 순시, 전일 작성한 작업일보 결제, 경리·서무 등 총무 업무 결재, 공정관리의 적정성 검토, 인력·장비 투입과 관련된 손익분석, 작업회의 등을 수행하였고, 간혹 설계도면의 변경이나 다음날 작업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22:0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격주로 주말 이틀을 휴무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는 민원이 발생하고, 성토 및 구조물 작업장소 중 연약지반이 나타나거나 법면조성 과정에 토사가 계속 나오는 등 예상하지 못한 현장사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비용의 과다투입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4번째 부임한 현장 소장인데, □□토건은 망인의 전임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사항과 민원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과투자가 계속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퇴사하자 망인을 그 후임으로 발령하였다.

한편, □□토건은 망인이 사망한 후 2003. 10. 경 적자 누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바) 망인이 사망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나 근무시간의 변화 등은 없었다.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배변을 보던 행위는, 망인이 팬티만 입고 현장 소장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용 업무를 마친 후 수면을 취하려다가 한 행위로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망인이 누워있던 곳이 평소 숙소로 사용하지 않았던 곳인 점, 망인이 당시 더운 날씨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누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취침도구라고 보이는 매트리스를 거절하였던 점, 망인이 부하 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누워 있었고, 당시 부하 직원이 현장소장실 바깥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배변행위의 장소가 현장사무실에 마련된 곳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장소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업무 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